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병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836

발의연월일: 2021. 10. 13.

발 의 자: 강병원 · 김영호 · 윤영찬

허종식 • 전혜숙 • 유동수

김민석 · 서영석 · 윤관석

임호선 • 이광재 • 최종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, 건강보험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 및 가입자·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할 요양기관의 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그러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, 이는 마약류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부실 또는 건강 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,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.

이에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타인 명의를 도용한 요양 급여 수급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4항 신설, 제57조제3항 및 제 119조제4항제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7조제3항 중 "제12조제5항을"을 "제12조제6항을"로, "진단"을 "진단이나 거짓 확인(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이용하여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)"으로한다.

제11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 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당이득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요양기관의 거짓 확인으로 보험급여가 실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건강보험증) ① ~ ③ (생	제12조(건강보험증) ① ~ ③ (현
략)	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
	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
	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
	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
	격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
	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본인
	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
	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
	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u>④</u> ~ <u>⑦</u> (생 략)	<u>⑤</u> ~ <u>⑧</u> (현행 제4항부터 제7
	항까지와 같음)
제57조(부당이득의 징수) ①・②	제57조(부당이득의 징수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	3
고나 거짓 증명(제12조제5항을	<u>제12</u> 조제6항을
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	
증명서를 양도·대여하여 다른	
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	
것을 포함한다), 요양기관의 거	
짓 <u>진단</u> 또는 준요양기관이나	진단이나 거짓 확인(제12조
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의 속임	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

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.

- ④·⑤ (생 략)
- 제119조(과태료) ① ~ ③ (생 전략)
 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2. (생략)

<신 설>

4. ~ 6. (생략) ⑤ (생략)

나 신분증명서를 이용하여 본인
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
한 것을 포함한다)
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119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
과 같음)
4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
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

- 3.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 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 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 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
- 4. ~ 6. (현행과 같음)
- ⑤ (현행과 같음)